





## 제 2 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4서울중재1~4	(각 정정청구) 정○○ 對 네이버 <sup>(1, 3)</sup> , 다음 <sup>(2, 4)</sup>
중재대상	(1) 『“아이 안 돌려주면 기흉수술 동의서 못 써준다” 학대 엄마 친권 앞에선 보호기관도 정부도 무기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3일자 사회면) (2) 『“엄마가 두려워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기사삭제)
이행결과	기사삭제
2014서울중재5~7	(각 정정청구) 이○○ 對 다음 <sup>(5)</sup> , 네이트 <sup>(6)</sup> , 네이버 <sup>(7)</sup>
중재대상	『“코치의 폭행 피해자인데 ○○ 출전자격 뺏다니요”』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3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 국가대표 코치인 신청인이 전지훈련 중 팔통증이 있는 국가대표 선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따돌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해당 선수가 폭행피해자임에도 숙소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결과	『○○ 국가대표 이 모 코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스포츠면)
2014서울중재8~10	(각 정정청구) 조○○ 對 네이버 <sup>(8)</sup> , 다음 <sup>(9)</sup> , 네이트 <sup>(10)</sup>
중재대상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김○○ 선수의 주치의인 신청인이 의료시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중재11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중재대상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사회면)

